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24일, 김민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2.27.)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민석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부랑인·노숙인·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등이 행한 결핵검진 등에 소요된 경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결핵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의 결핵예방 및 조기발견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 외 시·군·구 등의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의 규모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는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대상의 재정적·경제적 요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 대상의 재정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핵검진등 비용을 의무적 지원에서 임의적·선별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현행법상 보조금 교부 체계를 고려하여 국가가 시·군·구에 직접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수정주요내용

- 가.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호의2 삭제 및 안 제26조제2항 신설).
- 나.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직접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3항 삭제).
- 다. 부칙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함(안 부칙).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안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중 “2026년 1월 1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1.2. (생략)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 ----- ----- ----- -----. 1.2. (현행과 같음)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 ----- ----- ----- ----- -----. 1.2.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2의2.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u>	<u><삭제></u>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3. ~ 7. (개정안과 같음) ②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u>

제28조(국가가 부담하 는 경비 및 보조금)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28조(국가가 부담하 는 경비 및 보조금)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국가는 제26조 제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 · 특별 자치도 또는 시 · 군 · 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조할 수 있 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u>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 실시에 드 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u> 제28조(국가가 부담하 는 경비 및 보조금)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부 칙 -----공포 후 1년 이-----
---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생 략)	제26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u>